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. 11. 30 선고 2022가단557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9.

판 결 선 고 2022. 11. 30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8 지분에 관하여 2022. 1. 2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가소100612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. 5. 27. ‘C은 원고에게 17,281,583원 및 그 중 3,197,994원에 대하여 2020. 10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내용의 판결(이하 ‘이 사건 양수금 판결’이라 한다)을 받았고,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은 D과 피고가 각 1/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. D은 2022. 1. 6. 사망하였는데, 당시 상속인으로는 D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, E, F이 있었고, C의 법정상속지분은 2/9였다.

다. D의 상속인들은 2022. 1. 22. ‘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공유지분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한다.’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

라. 이에 따라 2022. 1. 27.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판결에 따른 채권액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있었던 2022. 1. 22.을 기준으로 하여 ‘17,281,583원 및 그 중 3,197,994원에 대하여 2020. 10. 18.부터 2022. 1. 21.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’으로서,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판결에 따른 채권이 위 2022. 1. 22.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, 이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- 1)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)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던 2022. 1. 22. 당시 C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원고를 포함한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
- 2) 또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3.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

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지분인 각 $2/18 (= 1/2 \times 2/9)$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원호

[별지]

목 록

1. 전라북도 익산시 G 대 357㎡

2. 전라북도 익산시 G

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익산시 H

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6.94㎡. 끝.

